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 시행령 별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, 이때 사업의 종류는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음

현재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나, '24.7.1.부터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시행될 예정으로, 변경된 산업분류내용을 반영하여 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

3. 주요내용

‘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’ 신설 및 현행 ‘방송업’을 ‘라디오 방송업, 텔레비전 방송업’으로 변경(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제다목, 별표2 제27호, 별표9 제14호 신설 및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사목, 별표3 제35호, 별표5 제31호 개정)

가)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‘정보서비스업’에 해당되던 일부 산업활동[인터넷(온라인) 동영상 서비스, 음악 및 오디오물 스트리밍 서비스 등]이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‘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’으로 산업분류가 변경됨

나) 한편,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‘방송업’에는 소분류 ‘라디오 방송업’과 ‘텔레비전 방송업’만 포함되었으나, 제11차 한국

표준산업분류에서는 ‘방송 및 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, 기존 소분류 ‘라디오 방송업’, ‘텔레비전 방송업’에 ‘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’이 추가되었음

다) 다만, ‘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’의 운영실태, 인력구성 및 유해 위험요인 등이 ‘정보서비스업’과 유사하므로, 법 시행령 별표의 ‘정보서비스업’에 ‘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’을 추가·신설하고, ‘방송업’을 ‘라디오 방송업, 텔레비전 방송업’으로 개정하여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, 이에 따라 산업분류가 변경된 업종의 법 적용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제2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란 제3호 사목 중 “방송업”을 “라디오 방송업, 텔레비전 방송업”으로 한다.

다. 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

별표 2의 사업의 종류란 제27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제28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하고,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35호 중 “제33호까지의”를 “제34호까지의”로 한다.

27. 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

별표 3의 사업의 종류란 제35호 중 “방송업”을 “라디오 방송업, 텔레비전 방송업”으로 한다.

별표 5의 사업의 종류란 제31호 중 “방송업”을 “라디오 방송업, 텔레비전 방송업”으로 한다.

별표 9의 상업의 종류란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,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22호 중 “제20호까지의”를 “제21호까지의”로 한다.

14. 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8808